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<h1>보도자료</h1>		
	보고	2018. 10. 4.(목) 조간	배포
담당부서	조사기획국	이관재 국장(3145-5550), 서창대 팀장(3145-5564)	

제 목 :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

-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대표적 불공정거래 위반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음
 - 이에 따라, '18년 1~7월 주요 적발사건 중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나 증권회사 직원이 연루되는 등 투자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'투자 유의사항'으로 안내하고자 함
- 한편, 금감원은 상장법인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('16년 17회, '17년 19회),
 - 올해에는 상장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'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'을 실시(24개 상장법인 및 5회 지역별 설명회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1.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자 유의사항

	혐의내용	주요 조치대상
1	상장법인 대표이사의 허위 보도자료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	상장법인 대표이사 계열회사 대표이사
2	허위의 전환사채 발행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	상장법인 회장 상장법인 대표이사
3	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	상장법인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지인
4	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시세조종행위	증권회사 직원

가. 상장법인 대표이사의 허위 보도자료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

사건개요

-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, 대규모 해외 수출 계획 등 허위 보도자료 및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한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

※ 「자본시장법」 제178조(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) 위반

- A 상장법인 대표이사 甲 등은 신규 사업 진출, 해외 합자회사 설립 등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및 공시를 이용하여,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 매도(부당이득 금액 : 00억원)
- A 상장법인 대표이사 甲 등은 영세 업체 대표이사 乙과 공모하여 해당 업체를 인수하여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외관을 만든 후,
 - 대규모 수출계획, 해외 법인 인수협약 체결 등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가 오르자 보유주식 매도(부당이득 금액 : 00억원)

<참고1> 상장법인 대표이사의 부정거래행위 과거 사례

-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은 해외사업에 신규 진출하여 회사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 위해
 - 해외 석유생산업체의 자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상품을 독점공급하는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 및 석유생산업체에 자재 공급을 통해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,
 - 동사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부정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(부당이득 금액 : 00억원)
- ☞ 상장법인 대표이사 : 징역 2년 6월(1심)

투자자 유의사항

-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,
 - 특히, 신규사업 진출,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, 해외 합작법인 설립과 같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경우 사업내용, 회사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할 필요가 있음

나. 허위의 전환사채 발행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

사건개요

- 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허위의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킴

※ 「자본시장법」 제178조(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) 위반

- A 상장법인 회장 甲과 대표이사 乙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가능한 고가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
(부당이득금액 : 0억원)

상장법인 경영진 및 투자자 유의사항

- (상장법인 경영진)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경우 불공정거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,
 -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공시한 후 이를 반복할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
- (일반투자자)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결정 등 공시 이후 대상자, 납입일 등 공시내용이 자주 변경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,

- 재무구조나 영업실적이 취약한 회사가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대규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, 유상증자 실시 등을 공시하는 경우 그 진위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

□ A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꼼꼼히 살펴보았을 경우, 해당 전환사채 발행의 진위여부를 의심해볼 여지가 있음

- 전환사채의 인수주체로 공시된 페이퍼컴퍼니는 甲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, 매출액 및 영업활동은 전혀 없고 회사 운영자금을 전적으로 甲에게 의존하는 상황

-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대규모 투자금을 조달하여 시설 투자에 사용한다는 내용(공시)은 신빙성이 없음

다.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

사건개요

□ 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 등 회사의 중요 정보를 공개 전에 주식매매에 이용

※ 「자본시장법」 제174조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) 위반

- A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甲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 및 경영권을 해외 유력 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,
 - 동 호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지인 乙에게 전달하여 주식을 매수하게 함(부당이득금액 : 0억원)

<참고2>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과거 사례

- A 상장법인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'부도 발생'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보유주식을 매도
 - 동 법인의 자금관리업무 담당 임원은 '회사의 대출원리금 연체정보' 등을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도
- ☞ 상장법인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: 징역 4년(대법원 확정)
상장법인 임원 :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(대법원 확정)
- B 상장법인 최대주주(법인)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'유상증자(00억원) 실시 및 최대주주 변경'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
 -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
- ☞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: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(1심)

- 최대주주 지분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회계·세무 자문을 제공한 회계법인의 임원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자의 대리인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

※ 「자본시장법」 제174조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) 위반

- A 상장법인의 회계·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의 임원 甲이 '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수도' 정보를 지득한 후,
 -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고 지인 乙 등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함(부당이득금액 : 0억원)
- B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C법인의 대리인 丙이 '유상증자 실시' 정보를 지득한 후,
 - 해당 주식을 매매하고 지인 丁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함(부당이득금액 : 0억원)

<참고3> 준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과거 사례

-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甲은 A社の 회계감사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동사의 영업실적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고, 이를 乙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함
 - 또한, 甲과 乙은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종목에 대해서 동료 회계사(회계감사 담당)로부터 직접 실적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(부당이득 금액 : 0억원)
- ☞ 공인회계사 甲, 乙 :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(대법원 확정)

상장법인 임직원 및 투자자 유의사항

- **(상장법인 임직원 등)**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할 경우 **형사 처벌**될 수 있으며,
 -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·교섭하고 있는 자 등*도 교섭 등의 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**임직원과 동일**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
 - *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·교섭하고 있는 자, 법령에 따른 인허가 권한을 가지는 자 등 준내부자로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당해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
- **(일반투자자)** 상장법인 임직원 등 회사의 내부자 또는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·교섭하고 있는 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매매에 이용할 경우 **형사처벌 대상**이 될 수 있으며,
 - 일반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라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**시장질서교란행위**로 처벌*될 수 있음
 - * 내부자·준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지득하지 않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 : 부당이익의 1.5배(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) 이하의 과징금 부과

<참고4> 상장법인 임직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활동

- 금감원은 '16년 이후 상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36회 실시('16년 17회, 17년 19회)
 - 올해에는 상장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'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'을 실시(소규모 상장회사를 위한 지역별 설명회 병행)
 - ※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많이 연루되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되,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사유, 기한 등 법규상 절차 및 유의사항 위주로 교육

- '18.6월,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수요를 파악한 결과, 64개 회사가 교육 희망
 - 이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임직원이 참석예정인 24개사(유가증권시장 4개, 코스닥시장 20개)에 대해 방문교육을 실시*하고,
 - * '18년 하반기 중 대상회사별로 희망시기 등을 감안하여 실시
 - 교육 희망인원이 적은 상장회사를 위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(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)에서 5회에 걸쳐 설명회 개최

<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 조치 현황 >

(단위 : 명)

구 분	2015		2016		2017		계	
	임원	직원	임원	직원	임원	직원	임원	직원
유가증권시장	11	4	13	12	19	9	43	25
코스닥시장	49	22	42	22	38	22	129	66
기타*	1	-	6	-	5	6	12	6
계	61	26	61	34	62	37	184	97

* 코넥스시장 상장법인, 비상장법인

라.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시세조종행위

사건개요

-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자금으로 시세에 관여할 수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 취득

※ 「자본시장법」 제176조(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) 위반

- 증권회사 직원 甲은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는 적은 금액으로 시세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,
 -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본인 및 고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〇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(부당이득금액 : 〇억원)

<참고5> 거래량 부진종목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과거 사례

- 일반투자자가 일평균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의 자금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한 종목을 선정하여 허위 매수주문 반복 제출 등으로 매수세를 유인하고,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하여 차익 실현(부당이득 금액 : 〇〇억원)
 - ☞ 일반투자자 : 징역 1년 6월, 집행유예 3년(1심)

투자자 유의사항

- 코넥스 상장종목이나 코스닥 중소형주 등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등(급증)하는 경우,
 - 해당 회사의 공시 및 보도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이상 급등 현상의 원인을 파악한 후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

【불공정거래 신고·제보 안내】

□ 상장회사 내부,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·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음

○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,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*을 지급하는 등

*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2,054만원, 1인 최대 5,920만원의 포상금 지급(20억원 상한)

○ 최적의 제보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, 전화, 우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·제보를 접수하고 있음

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

- 홈페이지 : www.fsc.go.kr, 전화번호 : 02-2100-2600

■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

- 홈페이지 : www.cybercop.or.kr

- 전화번호 : 금감원 콜센터 1332 (4번→3번)

- 우편접수 :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빌딩 5층
조사기획국 시장정보분석팀(우편번호 : 07321)

■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

- 홈페이지 : stockwatch.krx.co.kr, 전화번호 : 1577-3360